

## 10. 졸업

고등교육법과 학칙 등 제반법규에 의거 재학연한 내에서 수업연한의 충족과 소속학부(과) 소정의 교과목을 학점 구성표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수하고 졸업소요학점을 취득한 자로서 졸업자격인정 기준에 합격한 자를 심사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과정을 말한다.

### 가. 졸업요건

- 1) 수업연한을 충족한 자
- 2) 재학연한내에 졸업이 가능한 자
- 3) 해당학부(과)의 졸업소요학점을 취득한 자
- 4) 해당학부(과) 교육과정상의 졸업학점 구성표에 따른 교과목(교양, 전공, 일선 등)을 체계적으로 이수한 자
- 5) 전학년성적 평균평점이 1.75이상인 자(계절학기 포함)
- 6) 졸업자격인정기준(전공영역, 외국어영역, 컴퓨터영역)에 합격한 자

### 나. 조기졸업

- 학점취득능력에 따라 6학기 또는 7학기에 소속 학부(과) 졸업소요학점 전부를 취득하고 전학년 성적 평균평점이 4.0이상인 자(편입학자 제외)로 졸업자격인정기준에 합격한 자는 조기졸업이 가능하다. 다만 학칙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거나 조기졸업을 포기한 경우는 조기졸업이 불가능하다.

### 다. 교과목 이수

- 1) 교과목 이수는 입학년도 교육과정을 따라야 한다. 다만 학적변동 후 교과목이수는 복학하는 학년도의 소속 학년 학생이 입학했던 당시의 교육과정을 따를 수 있다.
- 2) 교육과정의 변동으로 이수해야 할 교과목이 폐지·변경된 경우에는 학부(과)에서 지정한 동일 교과목 또는 대체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라. 학년 수료

- 등록횟수, 취득학점 등을 고려하여 수료학년에 해당하는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으며, 수료학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설정 학년	120학점 학과	130학점 학과	140학점 학과	150학점 학과	160학점 학과	160학점 학과 (5년제)	169학점	225학점 학과
1	30학점이상	33학점이상	35학점이상	38학점이상	40학점이상	32학점이상	46학점이상	36학점이상
2	60학점이상	65학점이상	70학점이상	75학점이상	80학점이상	64학점이상	99학점이상	72학점이상
3	90학점이상	98학점이상	105학점이상	113학점이상	120학점이상	96학점이상	147학점이상	114학점이상
4	120학점이상	130학점이상	140학점이상	150학점이상	160학점이상	128학점이상	169학점이상	156학점이상
5						160학점이상		198학점이상
6								225학점이상

## 마. 졸업·수료 유보

- 8학기 이상 이수한 졸업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졸업 또는 수료 유보가 가능하며, 수료유보자는 졸업유보를 할 수 없다.
- 1) 졸업학점 이수 및 졸업자격인정기준에 합격한 자는 졸업유보 가능
- 2) 졸업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자격인정기준(전공, 외국어, 컴퓨터영역) 중 어느 하나의 영역이라도 인정받지 못한 자는 수료유보 가능
- 3) 졸업·수료 유보를 희망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학부(과)에 신청
- 4) 졸업·수료 유보는 총4회(최대2년)까지 허용하고 그 기간 동안 휴학 등 학적변동을 할 수 없으며, 수강학점 범위 내에서 수강신청 가능함. 다만 수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총 평점에 합산됨
- 5) 졸업·수료 유보자는 유보비(수업료의 8%에 해당하는 금액)를 납부해야 하며, 수강학점에 따른 등록금은 교학규정 제14조 제5항에서 정한 수업연한 초과자의 등록금 징수 규정을 적용하여 납입함
- 6) 졸업유보의 허가를 받고 유보비(수업료의 8%)를 납부한 이후에는 졸업유보를 취소할 수 없음. 다만, 사망, 질병, 취업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학생의 신청에 따라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졸업유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졸업 예정시기의 졸업자로 처리하되, 처리기한은 3월말, 9월말까지로 함